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내용

긴급여권이 더욱 빠르고 편하게 발급됩니다.(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)

□ (상황) ▲ 기존 사진부착식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 도입초기부터 사용되던 방식으로 국제권고기준 미달 및 보안 취약 ▲ 유효한 여권 未보유 국민이 긴급 사정(친지사망/질병, 여행, 출장 등)으로 출국 시, 광역 여권사무 대행기관(15개) 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긴급 여권을 발급 ▲ 긴급여권 발급시스템 노후화

□ (노력)

- · 법령 개정을 통한 긴급여권 신설(2021.7.6.)
 - 긴급한 사유로 발급되는 현행 긴급여권(일반여권)을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일반여권에서 분리하여 **긴급여권으로 별도 신설**
- · 보안성·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**차세대 긴급여권을 도입**하고 국내외 **247개소 여권발급기관(국내 66개소, 해외 181개소)에서 발급 개시** (2021.7.6.)
 - 위·변조가 용이한 기존 사진부착식 비전자여권을 대체한 **차세대** 긴급여권 도입을 위해 2019년부터 도입 사업 착수, 규격 검토, 시제품 적용, 시스템 구현, 직원교육 등 실무업무 전반을 수행
- ·국내 긴급여권 **발급기관 확대** 시행(2021.7.6.)
 - ※ 여권 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천공항,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대행기관 포함 기존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

여권과

· 긴급여권 발급방식 변경에 따른 신규 발급장비 도입 및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 배포

□ (성과)

- · 긴급여권 발급기관 확대로 국민 편익 증대
 - 긴급한 출국 사유 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국제공항 근처 지자체를 통한 긴급여권 발급 혹은 여권 추가기재 가능
 - 여권수요 집중 지역인 **서울 경기지역 지역 및 지방 거주 민원인** 편**익 증대**
- · 긴급여권의 발급제도 개선을 통한 여권의 보안성·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
 - 국제적 표준규격 준수,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과 보안 요소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 **디자인 개편** 및 발급방식 개선으로 **우리 여권의 신뢰성 향상**
 - 긴급여권 발급업무 체계 정비를 통한 **발급시간 단축**(약 30분 단축)
 - 발급장비를 교체하여 기존 고가 장비의 구매 유지·관리에 소요된 **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업무효율성 개**선
- · 프랑스, 인도네시아 등 기존 우리 긴급여권(일반여권) 불인정 국가 들도 신설 긴급여권 인정 결정
 - ※ 긴급여권 신설 후 EU집행위의 EU규정목록 상에 우리 긴급여권을 등재하여 전 EU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참조

북미1과	미국의 5.18 관련 문서 비밀해제로 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다. (5.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기록물 비밀해제 및 신속한 대국민 공개) □ (상황) '18.3월「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」, '19.12월 5.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강화 및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감 고조 □ (노력) 외교부는 美 국무부·국방부·주한미국대사관은 물론, 애틀란타
	소재 카터 도서관 등 관련기관까지 다각적으로 접촉하여 5.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상기 - 관련 문서의 공개가 아시아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도 맥이 닿는다는 점 부각
	□ (성과) 미 국무부로부터 5.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14건을 전달('21.5월) 받은데 이어, 추가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21건의 미측 문서 사본을 전달 받는('21.6월) 성과 거양 / 또한 카터 대통령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던 5.18 관련 문서 206페이지에 대한 신규비밀해제 성과('21.8월) / 이로써 우리측이 비밀해제를 요청한 국무부 생산 문서의 약 98% (80건 중 78건)가 공개
	「예외적 여권 사용」신청 및 발급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우리

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다. (「예외적 여권 사용」 신청 및 발급 전산화 서비스 시행) □ (상황) 기존에는 ① 신청인이 이메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②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이 외교부를 방문하여 허가서를 수령하는 방식 으로서, 해외 및 지방 체류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 및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부의 한계점 발생 *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은, 여권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여, 허가서를 교부받고 방문해야 함. 재외국민안전과 □ (노력) 영사민원24(http://consul.mofa.go.kr) 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개설 (2021.8.2.) o **온라인 신청 및 비대면 허가서 발급**(신청인 직접 출력) ○ 그 외 ▲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▲발급 시 메일 알림 ▲위변조 구별 바코드 생성 ▲개인정보 유효성 자동 검사 등 기능이 구현됨으로써, 민원인의 편리성과 함께 보안성도 유지 □ (성과) 플랫폼 개설 후 8월 한달간 총 65명의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

	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 유가족의 현지 방문 없이 사망자 유골
주파라과이대시관	국내송환을 지원하다.
	(변사자 유가족 편의를 위한 사망자 유골 국내 송환 지원)
	 □ (상황) 주재국 및 본국의 코로나19 관련 입국규제로 인해 사망자유가족이 현지 입국에 현실적인 어려움 직면 ○ 입국 후 자가격리 및 왕복 항공일정, 시신확인 및 인수, 화장, 주재국 보건 당국 승인, 유골 운송업체 선정 등에 30일 가량이 소요되는 상황
	※ 영사조력법상 공관은 시신처리, 국내 운구, 현지 방문 절차 등에 대한 안내 규정, 동 규정에 따라 변사자 발생시 유가족 연락 후 추후 절차 안내와 입국 지원이 일반적인 변사자 사건처리 방법
	│ │ (エ릭) ▲구세녹의 시선 음의 시니(시청 나눔을 구인고 표박 배정)를
	막기 위해 검찰청에 처리기한(10일) 연장요청 ▲ 복수의 현지 장례 업체 수배하여 유가족 안내와 동의를 거쳐 화장절차 알선 ▲ 유골 반출 승인 및 유골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서류 발급 대행
	o 현지 장례업체의 폭리에 유가족이 피해 받지 않도록 복수의 장례업체에서 사전 견적을 받아서 유가족에게 제공, 유골의 통관 및 운송 절차 전반을 담당 영사가 직접 모니터링
	 □ (성과) 유가족의 현지 방문 없이 유골을 안전하게 국내 가족에게 인도 ○ 유가족의 편의를 증진하고,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각 국 공관에서 유사사례 발생시 수범사례로 전파 가능

아프리카 땅에서 백신 접종에 소외되어 있던 마다가스카르 교민, 대사관의 노력으로 AZ 백신을 접종하다

(「우리 기업 및 재외국민 백신 접종」사업)

- □ (상황) 금년 3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백신 확보를 위해 전방위 외교를 펼치던 당시,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백신 미도입 입장 견지 / 우리 공기업이 45% 지분을 보유한 암바토비는 자체적으로 AZ 백신 수입을 계획하였으나,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백신 수입불허로 난항에 직면 ※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초기 백신도입을 거부한 전세계 7대 국가(탄자니아 등) 중 하나 ※ 광산회사인 암바토비는 코로나로 1년간 조업중단, 안정적 조업을 위해 백신이 긴요 이에 우리 대사관은 전 세계 재외공관 중 최초로 우리 기업의 백신수입지원 및 재외국민 백신 접종 계획 수립
- 주마다가스카르 대사관
- □ (노력) ▲대사관은 암바토비의 백신 수입 지원 및 한인회와 협력, 동백신으로 우리 교민 백신 접종 계획 수립, ▲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 등다양한 정부 기관과 긴밀히 접촉, 암바토비의 예외적 백신 수입하가 확보, ▲이후, 여러 백신 확보 난항에도 불구, 아래와 같은 적극적 노력 경주
 - ▲AZ 공급망 문제로 암바토비 백신 도착이 지연되자 유엔측과 백신
 스와프 협상으로 우리 교민 1차 접종 ▲이후 암바토비 백신 수입이 불발되자, 대사관은 유엔, 외교단 등 접촉, 교민들 2차 백신분 확보
 - 아울러, 대사관은 AZ 본사와 직접 접촉, 우리 공기업 백신 확보 지원
- □ (성과) 당초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던 교민들은 대사관의 적극행정으로 유엔 클리닉에서 안전하게 1차 접종 완료 / 2차는 유엔 클리닉과 대사관내에서 완료
 - 유엔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WHO 공인 백신접종증명서 예외적 확보
 - o 암바토비 직원 1차 백신 접종 지원 및 2차 백신 확보 측면 지원 중